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5

제출년월일 : 2001. 4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영세서민생활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(물가장관대책회의, 2001.01.31)에 따라,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전용면적 60㎡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3/1000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까지 확대함(안 제10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234조의16
- 나. 입법예고 : 의견제출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행정자치부 표준안(세정13400-20118)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임대주택에 대한감면) 제1항 제3호 중 “60제곱미터”를 “85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<생략> 3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</u>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 	<p>제10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3. ----- <u>85제곱미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